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·재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 그 통보 방법을 규정하고, 국민법제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의 제목 “(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)”를 “(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”을 “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 전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한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협의체등”이라 한다)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.

제8조의2제4항 중 “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”을 “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의견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2항”을 “다음”으로, “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”을 “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듣지 않은”으로, “관

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”을 “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회등의 의견을 듣도록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2.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제1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② (생략)

③ 삭제

④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.

⑤ 법제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<신설>

<신설>

제15조(국민법제관) ① 법제처장

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협의체 등”이라 한다)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④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 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의견 -----
-----.

⑤ ----- 다음 -----
-----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 등의 의견을 듣지 않은 -----
-----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-----
-----.

1.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.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<삭제>

은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법령
등의 정비·개선과 그 밖의 법
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
위한 자문을 위하여 다양한 분
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
갖춘 사람을 국민법제관으로 위
촉할 수 있다.

②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의 의
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
여 필요한 경우 국민법제관 회
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③ 국민법제관의 분야별 구성
및 운영, 국민법제관 회의 등에
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
다.